

2016년 시험대비 이론문제 정리

- 김영호 제공 -

제1장 재무회계개념체계

1. 재무회계개념체계 및 재무보고의 목적

다음은 재무보고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재무회계는 외부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관리회계는 내부정보이용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규칙주의에 따른다.
- (3) 재무회계개념체계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있어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한다.
- (4)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 (5)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 (6) 기업은 미래 순현금유입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풀이)

- (1) ○
- (2)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원칙주의에 따른다.
- (3)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재무회계개념체계에 우선한다.
- (4) ×
→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 (5) ×
→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 (6) ○

2.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1

다음은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 (2)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보는 일부 정보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하여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 (3)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이어야 유용성이 있다.
- (4) 구분표시는 예측가치와 관련이 없다.
- (5)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
- (6)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 (7)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 (8)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에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 (9)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10)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 (11)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풀이)

(1) ○

(2) ○

(3) ×

→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4) ×

→ 구분표시는 예측가치를 높인다.

(5) ×

→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6) ○

(7) ×

→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8) ○

(9) ×

→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10) ×

→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11) ○

3.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2

다음은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장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 (2)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일관성은 목표이고 비교가능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 (3)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을 다르게 보여야 한다.
- (4)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 (5)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한다.
- (6)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 (7)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보이용자를 위해 작성되지 않는다.
- (8) 때로는 박식하고 부지런한 정보이용자도 복잡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9)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특성이 다른 질적특정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재무보고기준의 전진적용으로 인한 비교가능성의 일시적 감소는 장기적으로 목적적합성이나 충실한 표현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소할 수도 있다.

(풀이)

(1) ○

(2) ×

→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3) ×

→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4) ×

→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

→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6) ○

(7) ×

→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보이용자를 위해 작성된다.

(8) ○

(9) ○

4. 재무제표의 요소

다음은 재무제표의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발생주의와 계속기업을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으며, 역사적 원가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가정은 발생주의 가정이다.
- (2) 기업은 현금흐름표(현금주의)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3) 특정항목이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한 법률적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유형자산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자산은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 (5) 수취채권과 부동산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자산은 소유권 등 법률적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이다.
- (6) 기업의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창출된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산이나 매장된 광물의 발견 등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 (7)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양자가 일치한다. 따라서 증여받은 채화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 (8) 일부 부채는 상당한 정도의 추정을 해야만 측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채를 충당부채라고도 한다.
- (9) 광의의 수익의 정의에서는 수익과 차익을 별개로 본다.

(풀이)

(1)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계속기업을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으며 역사적 원가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가정은 계속기업의 가정이다. 발생주의는 기본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

(3) ○

(4) ○

(5) ×

→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6) ×

→ 기업의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창출된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나 생산을 통하여 자산을 획득하지만 다른 거래나 사건도 자산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한 예로 증여받은 자산이나 매장된 광물의 발견 등이 포함된다.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않는다.

(7) ×

→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재화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8) ○

(9) ×

→ 광의의 수익의 정의에는 수익과 차익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에서는 차익을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않는다. 또한 광의의 비용의 정의에서도 비용과 차손이 모두 포함된다.

5.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과 측정

다음은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인식이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 (2)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는 항목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
 - ① 그 항목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 ② 그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 (3)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효익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 (4) 비용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 (5)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 (6)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의 가장 보편적인 측정기준은 현행원가이다.
- (7) 역사적원가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 자산은 취득의 대가로 취득 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부채는 부담하는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으로 기록한다.
- (8) 현행원가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 자산은 동일하거나 또는 동등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불하여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9) 실현가능(이행)가치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 자산은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채는 이행가치로 평가하는데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10) 현재가치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 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부채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부채를 상환할 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순현금유출액의 명목가치로 평가한다.

(풀이)

(1) ○

(2) ○

(3) ×

→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4) ×

→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5) ○

(6) ×

→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측정기준은 역사적 원가이다.

(7) ○

(8) ×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9) ×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0) ×

→ 예상되는 미래 순현금유출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한다.

6. 자본과 자본유지 개념

다음은 자본유지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에 기초하여 적절한 자본개념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만약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주로 명목상 투하자본이나 투하자본의 구매력 유지에 관심이 있다면 재무적 개념의 자본을 채택하여야 한다.
- (2) 자본유지개념은 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수익과 투자회수를 구분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 (3) 재무자본유지개념이 명목화폐단위로 정의된다면 기간 중 보유한 자산가격의 증가된 부분은 개념적으로 이익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유이익은 자산이 교환거래에 따라서 처분하기 전에는 이익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 (4) 만약 재무자본유지개념이 불변구매력 단위로 정의된다면 이익은 해당 기간 중 투자된 구매력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 (5) 실물자본유지개념하에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변동은 해당 기업의 실물생산능력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간주되어 이익에 해당된다.
- (6)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 반면 재무자본유지개념은 역사적 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풀이)

(1) ○

(2) ○

(3) ×

→ 개념적으로 이익에 속한다.

(4) ○

(5) ×

→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일부인 자본유지조정으로 처리된다.

(6) ×

→ 재무자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계의 순환과정 및 재무제표

1.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사항

다음은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경우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재고자산을 순액으로 표시할 수 없다.
- (2)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을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하는 것은 총액주의에 위배되므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 (3)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순액으로 표시한다.
- (4)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하더라도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는 비교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 (5) 비교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은 적어도 두 개의 재무상태표와 두 개씩의 그 밖의 재무제표 및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한다.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세 개의 재무상태표(당기 말, 전기 말,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두 개씩의 그 밖의 재무제표 및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한다.
- (6)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기 동일해야 한다.

(풀이)

(1) ×

→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

→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즉, 처분손익=처분액-장부금액-관련처분비용

(3) ×

→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4) ×

→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5) ○

(6) ×

→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① 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2. 재무상태표

다음은 재무제표 표시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1)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한다.

(3)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과 같이 정상영업주기의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을 포함한다.

(4)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역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5)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더라도,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풀이)

(1) ×

→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즉,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일부는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즉, 혼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2)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3) ○

(4) ×

→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5) ×

→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3. 기타포괄손익

다음은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내용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손익계산서는 당기손익을 구성하는 요소와 기타포괄손익을 구성하는 요소로 구분표시하여 반드시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 (2) 포괄손익은 일정기간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 (3) 기타포괄손익은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거래나 사건으로 인하여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 (4) 포괄손익에 영향을 주는 순자산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고 동시에 재무상태표에 자본의 별도구성항목으로 표시된다.
- (5) 비지배지분이 있는 경우에 회계기간의 기타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과 지배기업의 소유주의 귀속되는 몫으로 배분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공시한다.
- (6)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세후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기한다.
- (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은 항목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재평가잉여금,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가 있다.

(풀이)

(1) ×

→ 단일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두 개의 보고서 모두 가능하다.

(2) ×

→ 포괄손익은 일정기간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3) ×

→ 기타포괄손익은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거래나 사건으로 인하여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자본의 변동 중 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은 손익항목이다.

(4) ○

(5) ○

(6) ×

→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이와 관련된 법인세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

들에 관련된 법인세효과는 단일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할 수도 있으며,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7)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에 포함한다.

- (1) 재분류조정이 발생한 경우(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② 해외사업환산손익 ~ 해외사업장을 매각할 때 당기손익에 반영
 - ③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위험회피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에 반영
- (2) 재분류조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④ 재평가잉여금 ~ 자산이 사용되는 후속기간 또는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될 수 있다.
 - ⑤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자본내에서 대체될 수 있다.

4. 포괄손익계산서

다음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기업은 재무성과를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면 특별항목을 비롯하여 추가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재량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 (2)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영업이익을 본문에 표시하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5) 영업이익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항목이 있다면 영업이익에 이러한 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조정영업이익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풀이)

(1) ×

→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2) ×

→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기타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

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기능별 분류에 대한 추가 공시가 필요없다.

(3) ○

(4)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본문에 영업이익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영업손익

①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

제3장

금융상품 1

다음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내용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단,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하다.)

- (1) 선일자수표 (2) 선화증권, 화물상환증 (3) 받을어음, 환어음
- (4) 당좌차월 (5) 당좌개설보증권 (6) 수입인지, 엽서, 우표
- (7) 신종기업어음(CMA; 취득시 6개월 만기, 단 결산일로부터 1개월 후 만기도래)

(풀이)

- (1) ×: → 매출채권(받을어음)
- (2) ×: → 미착상품(재고자산)
- (3) ×: → 매출채권
- (4) ×: → 단기차입금
- (5) ×: → 장기금융자산
- (6) ×: → 소모품
- (7) ×: → 단기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종류

- (1) 통화 : 지폐, 주화
- (2) 요구불예금 : 보통예금, 당좌예금
- (3) 통화대용증권: 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송금수표, 여행자수표, 가계수표, 우편환, 전신회증서, 일람출급여음, 배당금지급통지표, 만기가 도래된 공사채의 이자표,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환어음 등
- (4) 현금성자산 :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으로서 취득일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한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단,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간이 단기이며 상환일이 정해져 있는 우선주는 현금성자산으로 본다.

현금성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 ② 취득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 ③ 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인 환매채
- ④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CD), 어음관리구좌(CMA), 신종기업어음(CP)
- ⑤ 기타 취득당시 만기일(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제4장

재 고 자 산

1. 취득원가의 결정

다음은 재고자산의 매입원가에 포함할 항목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재고자산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원가
- (2)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 (3)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
- (4) 관세환급금
- (5)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원가
- (6) 특정 고객을 위한 비제조간접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원가를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
- (7) 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요소
- (8) 일반적으로 용역제공기업이 가격을 산정할 때 이윤이나 용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원가

(풀이)

(1) ○

(2) ×

→ 기간비용으로 인식한다.

※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 ②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 ③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 ④ 판매원가

(3) ×

→ 매입원가에 차감

(4) ×

→ 관세납부금은 매입원가에 가산하고,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5) ○

(6) ○

(7) ×

→ 해당 금융요소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이차비용으로 인식한다.

(8) ×

→ 일반적으로 용역제공기업이 가격을 산정할 때 이윤이나 용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재고자산 단가결정방법

다음은 재고자산의 단가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방식이 다른 경우 동일한 재고자산에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2) 가중평균법의 경우 재고자산 원가의 평균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계산하여서는 아니된다.
- (3) 표준원가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원가와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의상 표준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다.
- (4) 개별법은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 (5)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원가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 (6) 소매재고법은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측정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한다.
- (7) 후입선출법은 대부분의 경우 실제물량흐름과 반대라는 점, 재고층의 청산 시 수익-비용 대응구조의 왜곡 등 여러 가지 비판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 (8)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고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하의 기말재고자산금액은 평균법하의 기말재고자산금액보다 작다.
- (9) 만일 재고수준이 매 회계연도 말에 “0” 이 된다면, 선입선출법 하의 당기순이익이 가장 작게 표시된다.

(풀이)

- (1) ×
→ 지역별 위치나 과세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재고자산에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 (2) ×
→ 가중평균법의 경우 재고자산 원가의 평균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총평균법)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이동평균법) 계산할 수 있다.
- (3) ×
→ 표준원가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에는 편의상 표준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다.
- (4) ○
- (5)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6) ○

(7) ○

※ ① 후입선출법의 장점

- 법인세를 미래로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 일반적으로 현행원가가 매출에 대응되므로 수익·비용대응이 잘 이뤄진다.

② 후입선출법의 단점

- 기본가정이 비현실적이다.
- 기말재고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지급능력(유동비율 등)이 과소평가된다.
- 이익조작가능성이 있다
- 재고층의 청산 시 비자발적 청산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8) ×

→ ① 재고수량이 증가하고 물가상승가 상승하는 경우의 크기 표시

- 기말재고액 : 선입선출법 > 평균법 > 후입선출법
- 당기순이익 : 선입선출법 > 평균법 > 후입선출법
- 법인세 비용 : 선입선출법 > 평균법 > 후입선출법
- 매출원가 : 후입선출법 < 평균법 < 선입선출법
- 현금흐름의 크기 : 후입선출법 < 평균법 < 선입선출법

② 재고수량이 증가하고 물가하락의 경우에는 부등호가 반대가 된다.

(9) ×

→ 다음 2가지 경우에는 모든 방법의 기말재고액과 당기순이익이 똑같다.

- ① 단가의 변동이 없을 때
- ② 매년 말 기말재고자산이 “0” 일 때

3. 재고자산평가

- (1)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 (2)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순실현가치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에 순실현가능가치란 예상판매가격을 말한다.
- (3) 저가법 평가시 총계기준도 인정된다.
- (4) 확정판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 (5)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며,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6) 원재료의 경우에 완성될 제품이 원가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평가손실이 발생한다면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풀이)

(1) ○

(2) ×

→ 순실현가능가치(원재료 포함)란 예상판매가격에서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의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될 수 있다.

(3) ×

→ 저가법은 항목별 또는 조별은 가능하나 총계기준은 인정되지 않는다.

(4) ○

(5) ○

(6) ×

→ 완성될 제품이 원가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는 감액하지 않는다.

제5장

유형자산

1. 취득원가의 결정

다음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관한 내용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유형자산의 최초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2) 화학제품 제조업체가 위험한 화학물질의 생산과 저장에 관한 환경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새로운 화학처리공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미래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없지만, 다른 자산에서 미래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해 필요하므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 (3)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관련 세금을 원가에 차감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인트 등을 가산한다.
- (4) 유형자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취득 원가에 가산하며, 또한,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제화(예: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가산한다.
- (5)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은 원가에 포함한다.
- (6)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용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획득한 수익은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한다.

(풀이)

- (1) ×
→ 유형자산의 최초 취득원가는 원가로 측정한다.
- (2) ○
- (3) ×
→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관련 세금을 원가에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인트 등을 차감한다.
- (4) ×
→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
- ② 설치장소와 준비원가
- ③ 최초의 운송 및 조립원가
- ④ 유형자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원가에 가산하며,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제화(예: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⑤ 전문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5) ×

→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②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③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6) ×

→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용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부수적인 영업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 아니므로 그러한 수익과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2. 취득원가의 결정 2

다음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관한 내용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명목금액으로 한다.
- (2) 대금 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자본화하지 않아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 (3) 유형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비용에 대한 중당부채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 (4)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 복구비용은 취득원가로 한다.
- (5)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신건물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 (6) 시운전이나 본격적인 가동준비를 위한 지출이라면 유형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 (7)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8)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선의 추정치를 취득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 (9)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부분의 기업특유가치는 세전 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풀이)

(1) ×

→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상당액으로 한다.

(2) ×

→ 대금 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자본화 대상이 아닌 한 만기까지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3) ○

(4) ×

→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 복구비용은 취득원가로 한다.

(5) ×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신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구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모두 토지원가로 하고 건물철거비용은 토지원가로 한다.

(6) ×

→ 시운전이나 본격적인 가동준비를 위한 지출이라도 유형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

→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8) ×

→ 다음의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①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②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9) ×

→ 세후 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정부보조금

다음은 정부보조금에 관한 내용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수익접근법에서는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현금회수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3) 정부보조금은 토지 등과 같은 비화폐성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화폐성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할 수 없다.
- (4) 정부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①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
 - ② 보조금의 수취
- (5)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 (6) 대부분의 경우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원가나 비용을 인식하는 기간은 쉽게 확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 비용을 인식하는 기간에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와 유사하게 감가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인식되는 비율에 따라 인식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7) 수익관련보조금은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을 말하며,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방법으로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하며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풀이)

(1) ○

(2) ×

→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

→ 정부보조금은 토지나 그 밖의 자원과 같은 비화폐성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한다.

(4) ○

(5) ×

→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이연수익법)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원가차감법)하여 표시한다.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인정된다.

(6) ○

(7) ×

→ 수익관련보조금은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을 말한다. 다음 두 가지 방법의 표시방법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으로 인정된다.

- ①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 과 같은 일반 계정으로 표시한다.
- ②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한다.

4. 차입원가의 자본화

다음은 차입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재고자산, 제조설비자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금융자산 및 투자부동산이 적격자산이 될 수 있으며 단기간 내에 생산되거나 제조되는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 (2) 차입원가의 범위에는 자본의 내제원가는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원가는 포함된다.
- (3)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한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은 자본화할 차입원가에서 차감한다.
- (4)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은 자본화할 차입원가에서 차감한다.
- (5) 적격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적격자산 지출액에 포함한다.
- (6) 회계기간동안 일반차입금에서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풀이)

- (1) 재고자산, 제조설비자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이 적격자산이 될 수 있으며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에 생산되거나 제조되는 재고자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2) ×

→ 차입원가의 범위에는 리스이용자의 운용리스크(비용), 자본의 실제원가 및 내제원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3) ○

(4) ×

→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은 자본화할 차입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5) ×

→ 적격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적격자산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6) ○

5. 감가상각

다음은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상각한다.
- (2)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분리하여 상각할 수 없다.
- (3) 제조설비를 포함하여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4)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년 말에 재검토한다. 이 경우에 재검토 결과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소급법으로 회계처리한다.
- (5)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영(0)이 된다.
- (6)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 (7)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표시하고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한다.
- (8) 정액법이나 체감잔액법을 사용하는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 (9)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및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단,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 (1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중요한 변동이 있다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이러한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며 소급법으로 회계처리한다.

(풀이)

(1) ○

(2) ×

→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상각할 수 있다.

(3) ×

→ 각 기간의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제조설비의 감가상각은 제조원가를 구성하고, 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해

당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4) ×

→ 회계추정의 변경으로서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5) ○

(6) ×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7) ×

→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며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 [큰 금액 또는 작은 금액 비교표]

유형자산 회수가능액	유형자산의 경우에 손상차손인식시 회수가능액이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중 큰 금액을 말한다.
재고자산 평가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취득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u>작은 금액을</u> 재고자산으로 표시한다
금융리스 자산·부채의 인식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중 <u>작은 금액을</u> 리스기간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매각예정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u>작은 금액으로</u> 표시한다.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의 경우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또는 위약금) 중 <u>작은 금액을</u> 당부채로 표시한다.

(8) ×

→ 정액법이나 체감잔액법을 사용하는 유형자산이 유희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산량비례법처럼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9) ×

→ 단서조항이 없다.

※ [감가상각방법의 비교표]

	유형자산	유한한 무형자산	비한정인 무형자산 및 영업권
상각방법	정액법, 체감잔액법 및 생산량비례법. 단서 조항 없음	정액법, 체감잔액법 및 생산량비례법. 단,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	상각하지 않음

(10) ×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중요한 변동이 있다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이러한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며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한다.

6. 자산재평가

다음은 자산재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자산재평가는 임의규정이며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매년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2) 특정 자산을 재평가 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할 필요는 없다.
- (3)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4)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또는 사용함에 따라 그 일부를 당기손익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풀이)

(1) ×

→ 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자산이 있는 반면에 변동이 중요하지 않아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 하는 것으로 충분한 자산도 있다.

(2) ×

→ 특정 분류 자산을 재평가 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3) ×

→ ①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감소된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증가된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 ×

→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사용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즉,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며 또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제6장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제1절 무형자산

1. 취득원가의 결정

다음은 무형자산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2)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라도 종업원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 (3)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로 한다.
- (4) 설립원가, 개업원가 및 신규영업준비원가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 (5) 교환거래(사업결합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닌)로 취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는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 (6)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7)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만족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의 원가로 다시 인식할 수 있다.
- (8)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실제 총 지급액이 된다.

(풀이)

(1) ×

→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2) ×

→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 급여와 같은 직접 관련되는 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

※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 포함)
- ②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 ㉠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 급여
 - ㉡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
 - ㉢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한 원가

(3) ×

→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는 비용으로 한다.

※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은 지출(즉, 기간비용에 해당)

- ①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원가(광고와 판매촉진활동 원가를 포함한다)
- ②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가(교육훈련비 포함)
- ③ 관리원가와 기타 일반경비원가
- ④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데 발생한 원가
- ⑤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
- ⑥ 자산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확립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손실과 같은 초기 영업 손실

(4) ×

→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 ① 사업개시활동에 대한 지출(설립원가, 개업원가, 신규영업준비원가)
- ② 교육훈련을 위한 지출
- ③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
- ④ 기업의 전부나 일부의 이전 또는 조직 개편에 관련된 지출

(5) ×

→ 교환거래(사업결합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닌)로 취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는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6) ○

(7) ×

→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8) ×

→ 무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에의 현금구입가격상당액으로 한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다음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은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전체 사업과 구별할 수 없더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 (2)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개발활동의 예로서 해당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 (3) 상업적 생산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 (4)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 (5)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풀이)

(1) ×

→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2) ×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연구활동에 해당한다.

※ 연구활동의 예

- ①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과 지출
- ② 연구결과 또는 기타지식을 탐색, 평가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
- ③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
- ④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

(3) ×

→ 상업적 생산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은 개발활동이며, 경제적 규모에 해당하면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 개발활동의 예

- ①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
- ②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 ③ 상업적 생산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④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4) ○

(5) ○

3. 무형자산 상각

다음은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자산은 상각하지 않으며, 여기서 비한정은 무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 (2)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에만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 (3)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보고기간 말 검토한다.
- (4)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영(0)이 된다.
- (5)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길어질 수는 있다.

(풀이)

(1) ○

(2) ×

→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매년 또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3) ○

(4) ○

(5) ×

→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제2절 투자부동산

다음은 투자부동산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은 투자부동산이다.
- (2)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이 아니다.
- (3)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다.
- (4) 금융리스로 제공된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이다.
- (5) 운용리스에서 원가모형으로 평가하고 있는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 (6) 부동산 중 일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부분별로 나누어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보유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 (7) 사무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리스이용자에게 경미한 보안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 (8)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종속기업에게 리스하여 종속기업의 본사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건물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 (9)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는다.

(풀이)

(1) ○

(2) ×

→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이다.

※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단,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
- ②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 ③ 직접 소유(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 ④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 ⑤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

(3) ○

(4) ×

→ 금융리스채권으로 분류한다.

※ 투자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①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
- ②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 ③ 자가사용부동산, 미래에 자가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 ④ 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 ⑤ 금융리스로 제공된 부동산

(5) ×
→ 운용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공정가치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6) ×
→ 부동산 중 일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부분별로 나누어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전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7) ○

(8) ×
→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종속기업에게 리스하는 경우 그 건물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에서 자가사용부동산에 해당한다.

(9) ×
→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는다.

※ [시가법 적용시 과목별 비교표]

	시가법 적용 여부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감가상각 실시
유형자산및무형자산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재평가잉여금 (기타포괄손익)	실시한다.
투자부동산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	당기손익에 반영	실시하지 않는다.

제7장

금융자산 2

1. 금융상품의 분류, 금융자산 인식, 측정 및 재분류

다음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미지급법인세, 충당부채, 선급비용 및 차입금은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 (2) 취득시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 공정가치에 가산(즉, 취득원가에 포함)하지만,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 (3)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원가로 측정하지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기 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5) 대여금및수취채권은 장·단기 구분 없이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 (6) 매기 말 평가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7) 최초 인식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은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예외 없이 재분류할 수 없다.
- (8) 지분증권으로서 원가법을 적용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재분류할 수 있다.
- (9) 채무증권으로서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 (10) 주식배당이나 무상주를 교부받았을 때 자산의 증가로 본다.

(풀이)

(1) ×

→ 미지급법인세, 충당부채, 선급비용은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융상품과 비금융상품의 분류]

구분	계정과목
금융상품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주식및채권, 매입채무, 차입금, 미지급금, 사채, 금융리스 등
비금융상품	선급금, 선급비용,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법인세, 충당부채, 운용리스 등

(2) ×

→ 취득시 거래원가

-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 ~ 당기비용으로 처리
- ② 매도가능금융자산 ~ 공정가치에 가산(즉, 취득원가에 포함)
- ③ 만기보유금융자산 ~ 공정가치에 가산(즉, 취득원가에 포함)

(3) ×

→ 만기보유금융자산도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과 목	최초 인식시	매 보고기간 말(후속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공정가치법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공정가치법 또는 원가법
만기보유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상각후원가

*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4) ×

→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5) ×

→ 대여금및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단, 단기인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과 목	매 보고기간 말	평가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당기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		
① 공정가치법 적용시	공정가치로 측정	기타포괄손익
② 원가법 적용시	원가로 측정	평가손익 없음
만기보유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평가손익 없음

(7) ×

→ 최초 인식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금융상품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다만, 금융자산을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며, 드문 상황의 경우에만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다.

※ [금융자산의 재분류]

금융자산의 재분류	재분류가 가능한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다른 범주의 금융자산	<p>①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보유기간 또는 발행 이후 기간 중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재분류하거나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분류변경할 수 없다.</p> <p>② 당기손익인식 지정 금융상품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은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p> <p>③ 단기매매금융자산 최초 인식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금융상품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다만, 금융자산을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며, <u>드문 상황의 경우에만</u>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다.</p>
매도가능금융자산(지분증권); 원가법 → 공정가치법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는 금융자산을 이전에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었으나 현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 재분류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지분증권); 공정가치법 → 원가법	보유의도나 능력이 변경된 경우, 매우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으로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보다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재분류한

	다.
만기보유금융자산(채무증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보유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 → 만기보유금융자산	보유의도나 능력이 변경된 경우, 매우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으로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보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재분류한다.

(8) ○

(9) ○

(10) ×

→ 주식매당이나 무상주를 교부받았을 때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회계처리 하지 않고, 단가만 수정한다.

1.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다음은 총당부채 등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있으며,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총당부채로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 (2) 우발부채는 과거사건은 발생했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이다. 총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3) 우발자산은 미래에 실현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발자산은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한다.
- (4)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다면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도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의 재무제표에 총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5) 총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지 않아야 된다. 따라서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의 경우에는 총당부채로 인식한다.
- (6) 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상업적 압력 때문에 공장에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비용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당부채를 인식한다.
- (7) 의무발생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거나 기업이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8) 법적의무가 있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총당부채를 인식한다.
- (9) 화재, 폭발, 또는 기타 재해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손사에 대비한 보험미가입의 경우에는 총당부채를 인식한다.
- (10)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총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 (11) 손실부담계약은 총당부채를 인식한다.
이 경우 다음의 ①과 ②중 큰 금액을 총당부채로 인식한다.
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②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풀이)

(1) ○

(2) ○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비교)

추정가능성 유출가능성	추정 가능	추정 불가능
가능성이 높음	충당부채로 인식	우발부채로 주석공시
어느정도 있음	우발부채로 주석공시	우발부채로 주석공시
거의 없음	공시하지 않음	공시하지 않음

(3) ×

→ 우발자산은 미래에 실현되지 아닐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우발자산은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공시한다. 그러나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시 된다면 더 이상 우발 자산이 아니며, 따라서 당해 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

→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의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5) ×

→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 이어야 한다. 따라서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의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6) ×

→ 다음의 경우에는 미래의 행위와 독립적이지 않다. 즉, 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상업적 압력 때문에 공장에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비용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운영방식을 바꾸는 등의 미래행위를 통하여 미래의 지출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당해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며 충당부채도 인식하지 않는다.

(7) ○

(8) ×

→ 법적의무가 있든 없든 대수선의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에 해당되며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9) ×

→ 화재, 폭발, 또는 기타 재해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손사에 대비한 보험미가입은 그 발생을 예측할 수 없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10) ○

(11) ×

→ 손실부담계약은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이 경우 다음의 ①과 ②중 작은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②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2. 총당부채 2

다음은 총당부채와 관련된 내용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예상되는 자산처분이 총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당해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총당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한다.
- (2) 총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은 제3자와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없다.
- (3) 어떤 의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 이행하여야 하는 전체의무 중에서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에 한하여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 (4)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총당부채를 어떤 지출에 대하여 사용하게 되면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으므로 당초 총당부채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그 총당부채를 사용한다.
- (5) 총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총당부채와 상계처리한다.
- (6)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후 이율이다.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 (7) 총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고 해당 증가금액은 이익으로 인식한다.

(풀이)

- (1) ×
→ 예상되는 자산처분이 총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당해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총당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 (2) ×
→ 총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은 제3자와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3) ○
- (4) ○
- (5) ×
→ 총당부채와 상계처리하지 않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총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6) ×
→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 전이율이다.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 (7) ×
→ 해당 증가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3. 사채 및 종업원급여

다음은 사채 및 종업원급여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1. 사채할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환입)하는 경우에 할인발행이면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고 할증발행이면 환입액은 매년 감소한다.
2. 할증발행된 경우에 사채기간동안의 총이자비용은 총현금이자에 사채할증발행차금을 가산한 금액이다.
3. 장부가액에 대한 이자비용의 비율은 정액법의 경우에 매년 일정하다.
4. 사채발행시 사채발행비가 지출된 경우 발행당시의 유효이자율은 발행당시의 시장이자율보다 반드시 낮다.
5. 사채발행비는 사채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며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6. 확정급여제도의 경우에는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종업원이 부담한다.

(풀이)

1. ×
→ 사채할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환입)하는 경우에 할인발행이든 할증발행이든 상각(환입)액은 매년 증가한다.
2. ×
→ 사채기간동안의 총이자비용
 - ① 액면발행의 경우; 총이자비용=총현금이자
 - ② 할인발행의 경우; 총이자비용=총현금이자+사채할인발행차금
 - ③ 할증발행의 경우; 총이자비용=총현금이자-사채할증발행차금
3. ×
→ 장부가액에 대한 이자비용의 비율;
 - ① 유효이자율법; 할인발행이든 할증발행이든 유효이자율로 항상 일정하다.
 - ② 정액법; 할인발행의 경우 감소하고, 할증발행의 경우 증가한다.
4. ×
→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사채발행비가 지출된 경우 발행당시의 유효이자율은 발행당시의 시장이자율보다 반드시 높다. 사채발행비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같다.
5. ○
6. ×
→ 확정급여제도의 경우에는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회사가 부담한다.
확정기여제도의 경우에는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종업원이 부담한다.

1. 자본의 증감

다음은 자본의 증감에 대한 내용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은 증가한다.
- (2) 주식배당과 무상주를 교부하면 자본은 불변이다.
- (3) 전환우선주를 전환하면 자본은 증가한다.
- (4)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면 자본불변이다.
- (5) 이월결손금보전목적으로 감자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자본은 감소한다.
- (6) 현금배당을 실시하면 현금유출액만큼 자본은 감소한다.
- (7)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적립하면 자본은 불변이다.
- (8)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면 자본불변이다.
- (9)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이 발생하면 자본불변이다.
- (10) 중요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하면 자본불변이다.
- (11)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누적효과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증가이다.
- (12)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증가이다.

(풀이)

(1) ×

→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은 감소한다.

- ① 자기주식 취득하면 취득액만큼 자본감소
- ② 자기주식 처분하면 처분액만큼 자본증가
- ③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자본불변

(2) ○

(3) ×

→ 전환우선주를 전환하면 자본불변이다.

그러나 전환사채를 전환하면 “장부금액×전환비율” 만큼 자본은 증가한다.

(4) ×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하면 “현금유입액(발행주식수×행사가격)” 만큼 자본증가.
주식선택권의 행사의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와 같이 자본이 증가한다.

(5) ×

→ 이월결손금보전목적으로 감자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자본은 불변이다.

그러나 실질적 감자(주급액의 환급, 자기주식의 매입소각 등)의 경우에는 현금유출액만큼 자본이 감소한다.

(6) ○

(7) ○

(8) ×

→ 자본조정항목의 상각(잉여금 처분)은 자본불변이다.
(예;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처분손실 및 감자차손의 잉여금 처분)

(9)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은 증가한다.
① 기타포괄이익의 증가(또는 기타포괄손실 감소) 자본은 증가한다.
② 기타포괄이익의 감소(또는 기타포괄손실 증가) 자본은 감소한다.

(10) ×

→ 중요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은 증가한다.
중요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이 발생하면 자본은 감소한다.

(11) ×

→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누적효과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은 증가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누적효과손실이 발생하면 자본은 감소한다.

(12) ○

2. 보고기간 후 사건

다음은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다음은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2) 보고기간 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 (4) 보고기간 후의 매출처의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의 매출채권에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정보이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 (5)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판매는 보고기간 말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 (6)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 (7)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 (8)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 (9)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투자자산의 시장가치가 하락한 경우

(풀이)

(1) ○

(2) ○

(4) ○

(5) ○

(6) ○

(7) ○

(8) ○

(9) ×

→ 시장가치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아니다.

제10장

주당순이익과 주식기준보상거래

다음은 주당순이익과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자원의 실질적인 변동을 유발하지 않은 보통주식수 증감의 경우에는 주식배당, 무상주, 주식분할, 주식병합이 있으며 의제무상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 한다.
- (3)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에 매년 말 공정가치로 재평가한다.
- (4)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5)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경우,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풀이)

(1) ×

→ 자원의 실질적인 변동을 유발하지 않은 보통주식수 증감의 경우

- ① 자본금전입이나 무상증자(주식배당 포함)
- ② 의제무상주
- ③ 주식분할
- ④ 주식병합

(2) ○

(3) ×

→ 주식결제형의 경우에는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매년 말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지 않는다. 반면에 현금결제형의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한다. 즉,

- ① 주식결제형의 주식선택권(자본조정항목)~ 결산일에 재평가하지 않는다.
- ② 현금결제형의 장기미지급비용(부채) ~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재평가한다.

(4) ○

(5) ×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경우,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보상원가)으로 인식한다.

제11장

수익의 인식

1. 수익의 인식과 측정, 거래의 식별

다음은 수익의 인식및측정, 거래의 식별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수익이란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한다.
- (2) 판매세, 특정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세금,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기업에 유입되어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효익이므로 수익이다.
- (3)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에 해당하하므로 수익이다.
- (4)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5)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이나 스왑거래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본다
- (6) 수익은 제공한 대가의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7)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이나 스왑거래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 (8) 품질보증조건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는 용역제공거래로 분류한다.
- (9) 부품공급을 포함한 설비유지보수계약이 확정가격으로 체결되는 거래는 재화판매거래로 분류한다.
- (10) 재화와 용역이 별개로 취급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각각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이를 재화판매거래로 분류한다.

(풀이)

(1) ○

(2) ×

→ 판매세, 특정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세금,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기업에 유입되어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 효익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익에서 제외한다.

(3) ×

→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에 해당하지만 대리인인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수익이 아니다. 대신에 이 경우에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다.

(4) ○

(5) ×

→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6) ×

→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공정가치 또는 순공정가치와 관련된 규정]

구 분	관련된 내용
공정가치	① 교환거래에서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u>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u> 로 측정한다. ② 정부보조금은 토지나 그 밖의 자원과 같은 비화폐성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u>공정가치</u> 로 회계처리한다. ③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u>공정가치</u> 로 측정한다. ④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u>공정가치</u> 로 측정한다. ⑤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u>공정가치</u> 로 측정한다. ⑥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이나 스왑거래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보며, 수익은 교환으로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u>공정가치</u> 로 측정한다. ⑦ 프랜차이즈 수익인식 방법에서 해당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제공하는 자산의 <u>공정가치</u> 에 기초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⑧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u>공정가치</u>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순공정가치	① 수확물의 경우 최초 인식시 <u>순공정가치</u> 로 평가한다. ② 생물자산의 경우 최초인식 시와 매 보고기간 말에 <u>순공정가치</u> 로 평가한다. ③ 유형자산의 경우에 손상차손인식시 회수가능액이란 <u>순공정가치</u> 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④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u>순공정가치</u> 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한다.

(7) ×

→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이나 스왑거래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본다. 이 경우의 수익은 교환으로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이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8) ×

→ 용역의 제공여부가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화판매에 부수적으로 수반된다는 내용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재화판매거래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품질보증조건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는 재화판매거래로 분류한다.

(9) ×

→ 재화의 제공여부가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용역제공에 부수적으로 수반된다는 내용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용역제공거래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부

품공급을 포함한 설비유지보수계약이 확정가격으로 체결되는 거래는 용역제공거래로 분류한다.

(10) ×

→ 재화와 용역이 별개로 취급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각각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이를 재화판매거래와 용역제공거래로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2. 재화의 판매의 일반적인 수익인식기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1)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②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④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 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상품인도 후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 ①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 ②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 ③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 ④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3)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더라도 해당거래를 판매로 보지 않고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4)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판매대금을 반환하는 소매판매의 경우에 미래에 반환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더라도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5)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예를 들면 해외 판매시 판매대금의 송금에 대한 외국 정부의 허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송금이 허가되어 불확실성이 제거된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

(풀이)

(1) ○

(2) ○

(3) ×

→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만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도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다면 해당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4) ×

→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판매대금을 반환하는 소매판매의 경우에 미래에 반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추정반환금액은 부채로 인식한다.

(5) ○

3. 재화판매의 업종별 수익인식기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업종별 수익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1) 미인도청구 판매

재화의 인도가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지연되고 있으나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지며 대금 청구를 수락하는 판매는 조건 충족시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2)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

보통 구매자가 재화의 인도를 수락하고 설치와 검사가 완료된 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의 인도를 수락한 시점에 즉시 수익을 인식한다.

① 설치과정이 성격상 단순한 경우

② 이미 결정된 계약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검사가 수행되는 경우

(3) 반품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품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4) 인도결제판매(cash on delivery sales)의 경우에는 인도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5)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6) 시용판매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인도한 날에 인식한다.

(7) 완납인도 예약판매의 경우에는 예약시에 수익을 인식한다.

(8) 현재 재고가 없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미리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취하는 주문으로 예를 들어, 생산중인 재화나 제3자가 고객에게 직접 인도하는 재화의 경우 미리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취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9) 판매후 채매입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회수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10) 출판물 및 이와 유사한 품목의 구독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가액이 매기 비슷한 경우에는 발송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품목의 가액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에는 발송된 품목의 판매가액이 구독신청을 받은 모든 품목의 추정 총판매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11)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현금회수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12)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는 수익으로 인식한다.

(13)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다.

(풀이)

(1) ○

(2) ○

(3) ×

→ 반품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점 또는 재화가 인도된 후 반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4) ×

→ 인도결제판매(cash on delivery sales)의 경우에는 인도가 완료되고 판매자가 현금을 수취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5) ×

→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6) ×

→ 시용판매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

(7) ×

→ 완납인도 예약판매의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만 수익을 인식한다.

(8) ×

→ 현재 재고가 없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미리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취하는 주문으로 예를 들어, 생산중인 재화나 제3자가 고객에게 직접 인도하는 재화의 경우 고객에게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9) ×

→ 판매후 재매입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약정이며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가 아니다.

(10) ○

(11) ×

→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판매가액은 할부금의 현재가치이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12) ×

→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즉, 재화를 인도하거나 판매한 시점에 인식하고,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13) ×

→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①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임대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상사는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전자쇼핑몰운영회사는 관련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4. 용역의 제공의 일반적인 수익인식기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 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②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 ③ 보고기간 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④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 (3)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풀이)

(1) ○

(2) ×

→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3) ×

→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5. 용역의 제공의 업종별 수익인식기준 1

용역의 제공의 경우 업종별 수익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설치수수료는 재화가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 (2) 광고제작사 등의 광고제작용역수익 해당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방송사 등의 광고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 (3) 보험대리수수료는 보험대리인이 추가로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험대리인은 대리인이 받았거나 받을 수수료를 해당 보험의 효과적인 개시일 또는 갱신일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보험계약기간에 추가로 용역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연하여 보험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4) 입장료

예술공연, 축하연, 기타 특별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하나의 입장권으로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의 입장료수익은 각각의 행사를 위한 수행된 정도가 반영된 기준에 따라 각 행사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5) 수강료는 현금회수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6) 회비가 회원가입만 위한 것이고 기타 모든 용역이나 제품의 제공대가가 별도로 수취되거나 별도의 연회비가 있다면, 이러한 회비는 회수에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없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만일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기간 동안 무상으로 용역이나 간행물을 제공받거나 재화나 용역을 비회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익이 제공되는 시기, 성격 및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7) 주문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주문시점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8) ① 이자수익은 현금회수시점에 따라 인식한다.

②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수취할 때 인식한다.

③ 로얄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풀이)

(1) ×

→ 설치수수료는 재화가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2) ×

→ 방송사 등의 광고수익은 해당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광고제작사 등의 광고제작용역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3) ○

(4) ○

(5) ×

→ 수강료 강의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6) ○

(7) ×

→ 주문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8)

① ×

→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② ×

→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③ ○

6. 용역의 제공의 업종별 수익인식기준 2

다음은 프랜차이즈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수익으로 인식한다.
- (2) 운영지원용역수수료는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3) 창업지원용역수수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창업지원용역과 기타의 무사항(예; 가맹점입지선정 등)의 대부분이 수행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지원용역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하여 인식한다.
 - ① 별도로 수취하는 운영지원용역수수료가 운영지원용역의 원가를 회수하고 적정이익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창업지원용역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하여 운영지원용역 제공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②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 또는 적정판매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가격으로 설비, 재고자산 또는 기타 유형자산을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원가를 회수하고 적정 판매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용역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한 후, 설비 등을 가맹점에 판매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4) 계약에 의한 권리의 계속적인 사용에 부과되는 수수료나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는 기타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5)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의 거래에서 본사가 실제로는 가맹점의 대리인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할 재화를 대신 주문하고 원가로 인도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대리행위 시에 수익을 인식한다.

(풀이)

- (1) ×
→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2) ○
- (3) ○
- (4) ×
→ 계약에 의한 권리의 계속적인 사용에 부과되는 수수료나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는 기타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권리를 사용하는 시점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5) ×
→ 이러한 거래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4. 농림어업

다음은 농림어업의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 (2) 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수확물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3) 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시장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고, 대체적인 공정가치 측정치가 명백히 신뢰성 없게 결정되는 경우에는 생물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 (4)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풀이)

- (1) ×
→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2) ×
→ 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그러나 매기 말 순공정가치의 변동은 인식하지 않는다.
- (3) ×
→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 (4)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계정과목별 최초인식 및 매 보고기간 말 평가(후속측정)]

과 목	최초인식 시	매 보고기간 말(후속측정)	기말 평가손익
재고자산	원가로 측정	저가법	당기손익
유형자산	원가로 측정	원가모형 ¹⁾ 또는 재평가모형	기타포괄손익
무형자산	원가로 측정	원가모형 ¹⁾ 또는 재평가모형	기타포괄손익
투자부동산	원가로 측정	원가모형 ¹⁾ 또는 공정가치모형	당기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공정가치법	당기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공정가치법 또는 원가법 ¹⁾	기타포괄손익
만기보유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상각후원가	평가손익 없음
생물자산	순공정가치로 측정 ²⁾	순공정가치법	당기손익
수확물	순공정가치로 측정 ²⁾	평가하지 않음	평가손익 없음

¹⁾ 원가법의 경우에는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²⁾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경우에 최초인식시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제12장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 (1)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탄력성 있게 적용한다.
- (2) 기업이 하나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서 다른 회계원칙(GAAP)으로 바꾸는 것을 오류의 수정이라 한다.
-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한번 채택한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없다.
- (4) 종전에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더라도 금액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보증비용을 지출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취급하는 품목에 변화가 생겨 품질보증비용의 금액이 커지고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 (5)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영향 받는 자본의 각 구성요소의 기초금액과 비교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의 기타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 (6)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한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다.
- (7)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 (8)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오류수정에 해당한다.
- (9)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된다.
- (10)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 (11) 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한다.

(풀이)

(1) ×

→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2) ×

→ 회계정책의 변경이라 한다.

- (3)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정당한 사유)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②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 (4) ×
 →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이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음의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 (5) ○
 (6) ○
 (7) ×
 → 전진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제작성한다.
- (8) ×
 → 이는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9) ×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된다.
- (10) ×
 →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 (11) ○

제13장

현금흐름표

다음은 현금흐름표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현금흐름정보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비교·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 (2)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기업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때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해야 하며,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 (3) 이자와 차입금을 함께 상환하는 경우,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은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
- (4)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 (5) 직접법보다 간접법을 적용하는 것이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간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6)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하며, 법인세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는다.

(풀이)

(1) ○

(2) ×

→ 이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는 단기차입금으로 표시해야 하며,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차이가 난다.

(3) ×

→ 이자와 차입금을 함께 상환하는 경우, 이자지급은 영업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고 원금상환은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

※ [이자 및 배당금의 분류]

계정과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자수익*	영업활동 또는 투자활동
이자비용*	영업활동 또는 투자활동
배당금수익*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
배당금지급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

*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자수익, 이자비용 및 배당금수익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4) ×

→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5) ×

→ 반대로 설명되어 있다.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6) ×

→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한다.

제14장

리스회계

다음은 리스회계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리스약정일은 리스의 주요사항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일이다.
- (2) 리스기간개시일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로 리스자산의 최초인식일(즉, 리스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적절하게 인식하는 날)이 된다.
- (3) 리스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해지불능기간으로서, 염가구매선택권이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더라도 그 추가기간은 제외한다.
- (4) 리스기간 중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항상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 (5) 리스의 분류는 리스기간개시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6) 내재이자율은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다.
- (7) 리스이용자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큰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인식한다.

(풀이)

(1) ×

→ 리스약정일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사항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이른 날이다. 그리고 리스는 리스약정일 기준으로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2) ○

(3) ×

→ 리스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이용자가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 그 추가기간을 포함한다.

(4) ×

→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경우

- ①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 ②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
- ③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④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상당하는 경우
- ⑤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리스자산인 경우

※ 그러나 위 ①~⑤에 해당하더라도 항상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다른 특성들을 고려할 때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 리스는 운용리스다. 예를 들어,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로 이전하거나 조정 리스료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5) ×

→ 리스의 분류는 리스약정일 기준으로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그리고 리스기간개시일에 리스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한다.

(6) ×

→ 내재이자율은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다.

(7) ×

→ 리스이용자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인식한다.

월가계산

1. 활동기준원가계산

다음은 활동기준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일반적으로 활동의 유형을 단위수준활동, 묶음수준활동(배치수준활동), 제품유지활동, 품질수준활동의 4가지로 구분한다.
- (2) 단위수준활동은 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수반되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주로 생산량에 비례적으로 발생하며, 주로 조립활동(직접노무시간), 절삭활동(기계작업시간), 품질검사활동(생산량) 등이 있다.
- (3) 묶음수준활동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원재료 구매, 작업준비 등과 같이 묶음단위로 수행되는 활동으로서 구매주문활동(주문횟수), 재료처리활동(재료처리횟수), 작업준비활동(준비횟수), 선적활동(선적횟수) 등이 있으며, 품질검사의 경우 표본검사는 단위수준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전수조사에 의한 품질검사는 묶음수준활동으로 분류된다.
- (4) 제품유지활동은 특정제품을 회사의 제품라인에 추가하거나 생산품목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제품설계(제품설계시간) 제품테스트(제품테스트횟수) 제품설계변경(설계변경횟수) 등이 있다.
- (5) 설비유지활동은 주로 제조공정이나 생산설비 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활동으로서 공장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유지관리, 제품별 생산설비관리 등의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 (6) 활동기준원가가 생겨나는 배경에는 원가정보의 수집 및 처리기술이 발전하여 원가측정 비용이 크게 감소되었다.
- (7) 서비스업체에서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기 어렵다.
- (8) 활동이 자원을 소비하고 제품이 활동을 소비한다. 원가의 낭비를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성과평가에도 유용하다.
- (9) 다음은 활동기준을 적용하면 효익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 ① 생산과정에 거액의 제조간접원가가 발생하는데 배부기준은 단순한 경우
 - ② 생산량, 제품크기 및 생산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
 - ③ 생산과 판매에 자신이 있는 제품의 이익은 높게, 생산과 판매에 자신이 없는 제품의 이익은 낮은 경우
 - ④ 제조과정이 복잡한 제품의 수익성은 낮게, 제조과정이 단순한 제품의 수익성은 높게 나타나는 경우
 - ⑤ 생산관리자와 마케팅담당자 사이에 제품의 제조원가와 마케팅원가에 대해 견해 차이가 없는 경우
 - ⑥ 회사가 치열한 가격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경우
 - ⑦ 제조간접비의 비중이 낮은 기업

(풀이)

(1) ×

→ 단위수준활동, 묶음수준활동(배치수준활동), 제품수준활동, 설비수준활동의 4가지로 구분한다.

(2) ○

(3) ×

→ 품질검사의 경우 표본검사는 묶음수준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전수조사에 의한 품질검사는 단위수준활동으로 분류된다.

(4) ○

(5) ○

(6) ○

(7) ×

→ 서비스업체에서도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면 유용하다.

(8) ○

(9) 다음은 활동기준을 적용하면 효익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

① ○

② ○

③ ×

→ 생산과 판매에 자신이 있는 제품의 이익은 낮게, 생산과 판매에 자신이 없는 제품의 이익은 높은 경우

④ ×

→ 제조과정이 복잡한 제품의 수익성은 높게, 제조과정이 단순한 제품의 수익성은 낮게 나타나는 경우

⑤ ×

→ 생산관리자와 마케팅담당자 사이에 제품의 제조원가와 마케팅원가에 대해 심각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

⑥ ○

⑦ ×

→ 제조간접원가의 비중이 높은 기업

※ 제조간접원가의 비중이 높은 기업

㉠ 다품종 소량생산의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간접원가의 비중이 높다.

㉡ 제품의 다양성이 증가되면서 개별제품이나 작업에 직접 추적이 어려운 원가의 비중이 증가되었다.

2. CVP 분석

CVP 분석의 가정 및 영업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모든 수익과 원가는 관련범위 내에서 곡선형이다.
- (2) 모든 원가는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로 구분된다.
- (3) 고정원가는 관련범위 내에서 일정하고, 변동원가는 조업도에 비례한다.
- (4) 제품의 판매단가는 판매수량에 비례한다.
- (5) 생산능력 및 원가요소의 가격은 조업도에 비례한다.
- (6)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매출배합은 달라진다.
- (7) 생산량과 판매량은 동일하다.
- (8) 안전한계율이 높아지면 영업레버리지도는 높아진다.
- (9) 고정비원가가 증가할수록 영업레버리지도는 낮아진다.
- (10) 손익분기점에 가까울수록 영업레버리지도는 낮아진다.
- (11) 판매량이 증가하면 영업레버리지도는 낮아진다.

(풀이)

- (1) ×
→ 모든 수익과 원가는 관련범위 내에서 선형이다.
- (2) ○
- (3) ○
- (4) ×
→ 제품의 판매단가는 일정하다.
- (5) ×
→ 생산능력 및 원가요소의 가격이 일정하다.
- (6) ×
→ 매출배합은 일정하다.
- (7) ○
- (8) ×
→ 안전한계율이 높아지면 영업레버리지도는 낮아진다.
안전한계율과 영업레버리지도는 서로 역수관계다.
- (9) ×
→ 고정원가(또는 단위당 변동원가)가 증가할수록 영업레버리지도는 높아진다.
- (10) ×
→ 손익분기점에 가까울수록 영업레버리지도는 높아진다.
- (11) ×
→ 판매량(또는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레버리지도는 낮아진다.

3. 전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및 초변동원가계산

다음은 전부, 변동, 초변동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전부원가계산에서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및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로 한다.
- (2) 변동원가계산에서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를 제품원가로 하고, 변동제조간접원가 및 고정제조간접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 (3) 초변동원가계산에서는 직접재료원가만을 재고가능원가로 한다. 즉, 매출액에서 직접재료원가를 차감하여 재료처리량공헌이익을 산출하고,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및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모두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 (4)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생산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변동원가계산 및 초변동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판매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5)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으면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보다 항상 더 크다
- (6) 전부원가계산 하에서는 생산과잉으로 인한 바람직하지 못한 재고의 누적을 막을 수 없다.
- (7) 판매량이 일정할 경우, 생산량이 증가하면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초변동원가계산 및 변동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일정하다.
- (8) 손익분기점분석에는 전부원가계산이 더 적합하고, 과세소득산출이나 외부보고목적으로 는 변동원가계산이 더 적합하다.
- (9) 전부원가계산은 기업의 단기적 이익분석에 적합하고, 기업의 중·장기적 이익분석에는 변동원가계산이 더 적합하다.

(풀이)

(1) ○

(2) ×

→ 변동원가계산에서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로 하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3) ○

(4) ×

→ 전부원가계산 및 초변동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생산량과 판매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변동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판매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5) ×

→ 전기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당기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보다 더 크다면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더 크더라도 변동원가계산하의 이익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나 전기와 당기의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동일하고, 생산량이 판매량이 많으면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보다 항상 더 크다.

(6) ○

(7) ×

→ 판매량이 일정할 경우, 생산량이 증가하면 전부원가계산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변동원가계산은 영업이익이 감소하며,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은 일정하다.

※ [판매량이 일정한 경우, 생산량과 이익과의 관계]

원가계산방법	이익결정 변수	생산량 증가(감소)시
전부원가계산	생산량, 판매량	이익증가(감소)
변동원가계산	판매량	불변
초변동원가계산	생산량, 판매량	이익감소(증가)

* 어느 방법이든 판매량이 증가하면 이익은 모두 증가한다.

(8) ×

→ 변동원가계산이 손익분기점분석에 더 적합하고, 과세소득산출이나 외부보고목적으로 전부원가계산이 더 적합하다.

(9) ×

→ 변동원가계산은 기업의 단기적 이익분석에 적합하고, 기업의 중·장기적 이익분석에는 전부원가계산이 적합하다.

4. 투자중심점의 성과평가

다음은 투자중심점의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잔여이익법이 가지고 있는 준최적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수익률법이 출현하였다.
- (2) 투자수익률법은 투자규모가 다른 투자중심점을 상호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잔여이익법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다.
- (3) 경제적부가가치는 재무적 성과만 고려하고 비재무적 성과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 (4) 경제적부가가치는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이 인정되므로 세후영업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5) 타인자본비용만을 고려하고 자기자본비용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인 부의 창출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풀이)

(1) ×

→ 투자수익률법이 가지고 있는 준최적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잔여이익법이 출현하였다.

(2) ×

→ 투자수익률법은 투자규모가 다른 투자중심점을 상호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준최적화의 문제점이 있다. 반면에 잔여이익법은 준최적화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교가능성은 없다.

- (3) ○
- (4) ○
- (5) ×

→ 경제적 부가가치는 타인자본비용뿐만 아니라 자기자본비용도 고려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부의 창출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 경제적부가가치의 장·단점

① 장점

- ㉠ 경제적 부가가치는 당기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을 더 중시한다. 영업이익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판단하는데 더 유용하다.
- ㉡ 경제적 부가가치는 타인자본비용뿐만 아니라 자기자본비용도 고려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부의 창출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 ㉢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문은 구조조정하거나 처분하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문에 투자를 유도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 ㉣ 성과평가를 할 경우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사용하면 경영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곧 주주의 부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여 결국 경영자는 주주의 입장에서 경영을 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게 된다.

② 단점

-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서는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인정하므로 회계 처리방법에 따라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
- ㉡ 재무적성과만 고려하고 비재무적성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 자본비용의 산정이 어렵다.

5. 품질원가계산

다음은 품질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제품의 품질은 설계품질과 적합품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품질원가는 생산자 품질이라 할 수 있는 설계품질과 관련된 것이다.
- (2) 품질원가는 제품에 불량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불량이 발생하는지를 검사하고, 불량이 발생한 경우 초래되는 모든 원가를 의미한다.
- (3) 품질원가는 예방원가 및 평가원가로 구성되는 통제원가와 내부실패원가 및 외부실패원가로 구성되는 실패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
- (4) 품질원가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통제원가와 실패원가 사이에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5) 예방원가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원가로서 품질관리를 위한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훈련비, 생산설비의 유지보수비,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

- (6) 평가원가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내부적으로 설계한 내용과 일치하는가 또는 외부적으로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로서 품질엔지니어링, 설계엔지니어링 등이 여기에 속한다.
- (7) 내부실패원가는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활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원가로서 공정검사, 원재료 검사원가, 제품품질검사원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
- (8) 외부실패원가는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후, 고객에 의해서 발견된 제품결함을 해결하는데서 발생하는 원가로서, 손해배상비용, 판매기회의 상실, 작업폐물처리 및 재작업원가 등이 있다.

(풀이)

(1) ×

→ 제품의 품질은 설계품질과 적합품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품질원가는 생산자 품질이라 할 수 있는 적합품질과 관련된 것이다.

※ 설계품질 ~ 제품이 고객의 욕구에 맞게 잘 설계되었는가를 의미한다.

적합품질 ~ 제품이 설계에 맞게 잘 생산되었는가를 의미한다.

(2) ○

(3) ○

(4) ×

→ 통제원가와 실패원가사이 상충관계 (trade-off)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5) ○

(6) ×

→ 품질엔지니어링, 설계엔지니어링은 예방원가에 속한다.

(7) ×

→ 공정검사, 원재료 검사원가, 제품품질검사원가는 평가원가에 속한다.

(8) ×

→ 작업폐물처리 및 재작업원가는 내부실패원가에 속한다.

※ [품질원가의 분류]

품질원가	종 류
예방원가	품질관련교육, 훈련원가 및 토의원가,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원가, 디자인분석원가, 예방적 설비유지·보수원가, 설계엔지니어링, 품질엔지니어링 등
평가원가	구입한 부품 또는 원재료의 검사원가, 공정검사, 제품품질검사원가 등
내부실패원가	원재료의 반품 및 재구입에 따른 원가, 작업폐물처리 및 재작업원가, 공손원가 등
외부실패원가	제품수리 및 품질보증원가, 손해배상비용, 고객서비스센터 운영비용, 판매기회의 상실, 클레임 처리원가 등

6. 전략적 원가관리

다음은 전략적 원가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목표원가계산은 제조단계에서의 원가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
- (2) 카이젠원가계산(개선원가계산)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제조이전단계에서의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3) 제품수명주기원가는 제품의 기획 및 개발·설계에서 고객서비스와 제품폐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의미한다.
- (4) 제약이론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병목공정을 파악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서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제약이론을 원가관리에 적용한 재료처리량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직접재료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5) 가치사슬원가에서는 제품 생산 이전에 발생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 (6) 균형잡힌 성과표는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성과를 측정한다.
- (8) 균형잡힌 성과표는 조직의 전략과 성과평가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이 강조된다.
- (9) 균형잡힌 성과기록표의 장점은 계량화된 객관적인 측정치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풀이)

- (1) ×
→ 목표원가계산은 제조이전단계에서의 원가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
- (2) ×
→ 카이젠원가계산(개선원가계산)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제조단계에서의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3) ○
- (4) ○
- (5) ×
→ 가치사슬원가에서는 제품 생산 이전에 발생한 활동과 생산 후 활동과 관련된 원가도 분석한다.
- (6) ○
- (8) ○
- (9) ×
→ 균형잡힌 성과표란 전통적인 계량화된 재무적지표와 비재무적지표를 균형있게 반영하여 하나로 통합한 종합적인 측정관리시스템이다.

위에 제시된 자료는
모두 회계학(7판 또는 8판)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기본서와 함께 정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서에 있지만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
또한 기본서에 없는 내용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정리한 내용들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서브노트는 자기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고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2010년 시험부터 적용되었으며,
그 이후에 출제된 이론문제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5문제
2011 ; 7문제
2012 ; 7문제
5013 ; 6문제
5014 ; 8문제
5015 ; 9문제